

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1)

① 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② 상 호 (사업자등록번호)		③ 성 명	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	--

기 업 업 무 추 진 비 등 명 세

④ 계 정 과 목					합 계
⑤ 계 정 금 액					
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	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(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의 지출금액 등 포함)				
	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	⑦ 3만 원 초 과 ※ 경조금은 20만원 초과			
		⑧ 3만 원 이 하			
		⑨ 현물기업업무추진비			
		⑩ 계(⑦ + ⑧ + ⑨)			
	⑪ 계 (⑥ + ⑩)				
필요 경비 부인액	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(⑦)				
	⑬ 기 타				
	⑭ 계 (⑫ + ⑬)				
⑮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(⑪ - ⑭)					

작성방법

[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1)]

1.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: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(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), 현금영수증 거래분과 계산서·세금계산서 거래분,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,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기업업무추진비 또는 농·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(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⑦ 3만원 초과(경조금은 20만원 초과)란 및 ⑧ 1만원 이하란: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(현물기업업무추진비는 제외합니다)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(2020년 지출분까지는 1만원 초과분).
3. ⑬ 기타란: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,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
기 업 업 무 추 진 비 조 정 명 세 서 (2)

① 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	상호	③ 성명	
	년 월 일까지	② 사업자등록번호		

1.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

구분			금액
④ 1천200만원(중소기업은 3천600만원) × 과세기간월수()/12			
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	총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× 30/10,000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× 20/10,000	
		500억원 초과 금액 × 3/10,000	
		⑤ 소계	
	일반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× 30/10,000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× 20/10,000	
		500억원 초과 금액 × 3/10,000	
		⑥ 소계	
	⑦ 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	(⑤ - ⑥) × 10/100	
	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(④ + ⑥ + ⑦)		
문화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제 한법」 제136 조제3항)	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(⑨와 (⑧×20/100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)		
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한도 (「조세특례제 한법」 제136 조제6항)	⑪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
	⑫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⑪과 (⑧×10/100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]		
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(⑧ + ⑩ + ⑪)			
⑭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[명세서(1)의 ⑮]			
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(⑭ - ⑬)			
⑯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(⑬과 ⑭ 중 적은 금액)			

2. 기준수입금액 명세

⑰ 일반수입금액	⑱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	⑲ 총수입금액 (⑰ + ⑱)

작성방법

[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2)]

1. ④란 작성 시 중소기업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) 외의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을 적용합니다.
2.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“⑰ 일반수입금액”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, 일반수입금액은 “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”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 이하,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, 5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·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“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⑨·⑩)”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4. “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⑪·⑫)”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5. “⑭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”란: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1)의 “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”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6. “⑰ 일반수입금액”란 및 “⑱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”란: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